

광주광역시서구육교홍보물설치사용료징수조례폐지안

1. 제안이유

- 육교 홍보물 설치 사용료 징수조례 제정 준칙안을 시에서 마련하여 자치구에 통보하여 조례를 제정 시행하여왔으나,
- 육교에 홍보물 설치하는 옥외광고물 관리법시행령 제10조1항11호의 규정에 금지사항으로 상위법을 위배하고 있어 조례를 폐지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- 본 폐지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

3. 참고사항

- 옥외광고물 관리법시행령 제10조(광고물 등의 표시 금지역·장소 등) 1항
- 지방자치법 제15조

4. 검토의견

- 본 조례폐지안은 1997. 6. 16일 육교를 이용한 각종 홍보물에 대한 활용도가 높고 불법 홍보물 난립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육교이용 홍보물 설치에 적정을 기할 뿐만 아니라, 허가 후 사용료를 징수하여 자치구 수익증대를 도모코자 제정하였으나 상위법위반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.
-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있으며,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 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된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,
- 최근 광주광역시 종합감사에서도 옥외광고물시행령 제10조 (광고물 등의 표시금지지역·장소 등) 1항 11호에 명백히 법령위반한 사례로 지적되고,

- 또한 육교에 각종광고물 난립으로 도시미관저해 및 강풍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광고제도 수립을 위해 더 이상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며,
따라서 본 조례 폐지안은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,
- 다만 조례 폐지 후 육교를 이용한 광고주들의 편익과 민원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※ 참 고 사 항

■ 광주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·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

- 제2조 정의 편에서
 - 3항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있어 수분함양을 기존 75% 미만으로 할 때는→쓰레기양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었고
개정안 부산물은 25%미만, 발효또는 발효건조수분량을 40%미만으로 하는 것은 →음식물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을 하는데 그 의의가 있겠다 하겠습니다.
- 제9조
 - 감량화 시설 삭제는 화정2동 신동아아파트에 시범설치하였으나 예산 및 심한 악취로 인한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어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어 삭제하게 되었고
- 제14조 가산금규정 및 제15조 이의신청규정은 지방세법에 의하여 신규로 삽입하였음.
기타(타 구 조례개정 현황)
 - 동구 : 2000.9.22
 - 남구 : 2000.6.26
 - 북구 :2001.1.10

■광주광역시서구육교홍보물설치사용료징수조례폐지안

○과태료 부과에 대하여

-조례 폐지 후 불법으로 광고물을 설치시 대책은

- 옥외광고물관리법 제20조 “과태료를 부과한다”에서
“법을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”
제2항, “과태료는 시 도지사가 부과한다”.

- 따라서 광주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9조 권한의 위임에서
“시장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”에서
별표5, 권한위임사항에서 20번 항목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구청장
한테 위임할 수 있어 별도의 조례제정이라든지 별도의 대책은 필요
없음.